

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‘대학’)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, 운영하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및 추진 절차와 조직을 정하여 발전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추진 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
제2조(정의) “대학발전계획”이라 함은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대학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, 목표, 추진전략, 추진체계, 세부실행계획 및 예산을 포괄하여 말한다.

제3조(조직과 기능) ①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실행하며 그 성과를 확인하여 대학의 정책과 제도, 교육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「대학발전계획추진위원회」(이하 ‘위원회’)을 둔다.

② 위원회는 대학의 교육, 경영, 시설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기획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총장, 간사는 기획전략팀장으로 한다.
(개정 2018. 12. 12.)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(개정 2020. 3. 16.)

1.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내·외 의견 수렴 및 분석
2.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내·외 여건 조사 및 분석
3. 발전계획 추진조직 및 예산확보, 성과관리 점검 및 환류
4. 발전계획과 학사구조개혁(학부(과), 전공 개편 및 정원 운영)의 연계성 확보
5. 행정부서, 부설기관, 단과대학 및 학과 단위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6. 중장기 대학경영 방향수립, 재정운용, 대외협력 등에 관한 발전계획 사항
7. 발전계획 연간운영계획서 및 운영성과보고서 심의 의결
8. 기타 대학 발전을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우리대학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 및 대학경영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구성원들의 정책 제언을 위해, 위원회 산하 연구조직으로 호서발전연구회를 둔다.(개정 2020. 3. 16., 2020. 4. 1.)

⑥ 발전계획의 실무추진을 위해 발전계획실무위원회를 두며, 추진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20. 3. 16., 2020. 4. 1.)

제4조 (발전계획 수립) ① 총장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의 위원회 또는 데스크포스 팀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1.외부환경분석(지역특화분야 및 산업현황), 2.내부역량진단, 3.학생, 교수, 직원, 지역사회 및 산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분석, 4.이전 발전계획 성과평가 등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 3. 16.)

③ 총장은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 (발전계획 추진 및 환류) ① 기획처는 대학 경영을 둘러싼 다양한 대내·외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매 학년도 초 대학발전계획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각 부서에 전달한다.

② 각 부서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발전계획을 추진한다.(개정 2020. 3. 16.)

- ③ 각 부서는 사업 종료 후 부서별 발전계획 추진결과를 자체평가한 뒤 기획처에 제출하고, 기획처는 발전계획성과평가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 발전계획 연차평가를 시행한다.(신설 2020. 3. 16.)
- ④ 연차평가에는 발전계획 성과지표 달성 정량평가, 추진내용 정성평가,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.(신설 2020. 3. 16.)
- ⑤ 연차평가는 1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신설 2020. 3. 16.)
- ⑥ 연차평가의 결과는 단기(1년)와 중기(2년 이상)로 구분하여 환류하고, 단기환류로 성과지표를 조정할 수 있고 중기환류로 성과지표 및 세부추진과제를 조정할 수 있다.(신설 2020. 3. 16.)
- ⑦ 연차별 발전계획 추진성과 평가결과는 차년도 연차계획에 반영하여 발전계획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추진되도록 한다.
- ⑧ 기획처는 관련 부서에 발전계획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관련부서는 기획처의 협조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- ⑨ 발전계획의 실행 결과를 단위부서와 그 소속 구성원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6조 (발전계획예산 확보 및 집행) ① 대학은 발전계획이 실현가능하도록 발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 3. 16.)

- ② 각 부서는 예산 편성시 발전계획 과제에 해당하는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.
- ③ 기획처는 예산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발전계획 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.
- ④ 기획처는 별도의 특별예산을 투입하여 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7조 (호서발전연구회)

- ① 호서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과 구성원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호서발전연구회(이하 '연구회'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함으로써,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.
 1.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방안
 2. 대학의 특성화 분야 선정과 전략 방향
 3. 교육환경 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
 4. 교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학 정책 방향
 5. 기타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③ 연구회는 총 40인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되며,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1. 교수: 단과대 학장, 교무위원의 추천
 2. 직원: 실무부서 팀장, 사무처장의 추천
- ④ 연구회의 회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연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정례회의는 학기별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주요 논의사항이 발생하거나, 총장의 요청 또는 연구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.
- ⑥ 정례회의를 통해 도출된 주요 주제, 대학 주요 부서 및 소통협의위원회의 요청 등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며, 연구수행 인원은 해당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위원 중에서 적절히 선발한다.
- ⑦ 정책연구 결과물은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기본 자료로 활용하며, 기밀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, 교내 구성원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⑧ 위촉된 연구위원에게는 업적 및 수당 등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⑨ 연구위원 참여에 따른 보상 지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, 연구회의 정례회의 및 정책연구

참여도, 연구 결과물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보상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 기준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4. 1.]

부 칙(2018. 3. 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본 규정의 제정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발전위원회 내규는 폐지한다.

부 칙(2018. 12. 12)

제1조 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 조직개편에 따라 ‘기획팀’을 ‘기획전략팀’으로 한다.

부 칙(2020. 3. 16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